교훈: 성실 · 창의	# 가 정 통 신 문 "세계를 향한 미래교육, 미래를 위한 창의교육" 효양고등학교 (http://www.hyoyang.hs.kr)	담당부서: 학생부 담당전화: 645-7034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844번 게시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1월 08일까지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4일

효양고등학교장

2024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관련 조항	의견	비고
학생생활규정 제 7 조 의사표현의 자유		
학생생활교육규정 제6조 구성 및 의결		
학생생활교육규정 제7조 기능		
학생자치규정 제48조 후보자의 자격		
학생생활규정 제4장 규정의 개정, 학생생활교육규정 제5장 규정의 개정, 학생자치규정 제11장 규정의 개정		

20 년 월 일

학부모(보호자) 성명: (서명)

학 생 성명: (서명)